

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(제42조제1항 관련)

1. 자격기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

- 가.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- 나. 「건축사법」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
- 다. 「기술사법」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
- 라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·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·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 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
- 마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
- 바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
- 사.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(같은 항 제3호의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)
- 아.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

2. 기술인력기준: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2명 이상 갖출 것

감리원 등급	자격기준
고급감리원	<p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</p> <p>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, 기계안전기술사, 인간공학기술사, 전기안전기술사, 화공안전기술사, 건축시공기술사, 건설안전기술사, 대기관리기술사,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「기술사법」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사람</p> <p>나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,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</p> <p>다. 「건축사법」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사람</p> <p>라. 환경보건, 환경위생, 산업보건, 산업위생, 산업안전, 환경공학, 위생공학, 건축재료 관련 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</p>

	<p>마. 환경보건, 환경위생, 산업보건, 산업위생, 산업안전, 환경공학, 위생공학,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</p> <p>바.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사람</p>
<p>일반감리원</p>	<p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일반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</p> <p>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, 산업안전기사, 건설안전기사, 건축기사, 대기환경기사,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</p> <p>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,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</p> <p>다. 「건축사법」 제7조에 따라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(건축 분야로 한정한다)</p> <p>라. 환경보건, 환경위생, 산업보건, 산업위생, 산업안전, 환경공학, 위생공학, 건축재료 관련 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</p> <p>마. 환경보건, 환경위생, 산업보건, 산업위생, 산업안전, 환경공학, 위생공학,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</p>

비고

가. "직무교육기관"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) 국립환경인재개발원

2) 산업안전·보건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

나. "직무교육과정"이란 석면해체·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, 석면조사·분석 방법, 석면작업 안전보건 관리 등 감리원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. 이 경우 교육과목·교육이수시간 등 직무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.

3. 시설·장비 기준

가. 시설기준: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갖출 것
 나. 장비기준

종류	수량
1) 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	소속 고급감리원 수 이상
2) 방진마스크 3) 음압측정기 4) 두께측정기 5)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6) 고글형 보호안경, 안전화, 안전모	소속 감리원 수 이상
7) 방진마스크 필터, 보호복, 보호장갑, 보호 덧신	소속 감리원 1명당 30개 이상

비고

- 가. 2) 및 7)의 방진마스크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8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특급 마스크만 해당한다.
- 나. 5)에서 "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"이란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하며, 크기·모양·재질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.